

<b>의안 번호</b>	<b>1464</b>	<b>【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】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8. 23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24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11.(화)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출결정액 : 445,315천원(일반회계)
  - 1) 지출액 : 391,715천원
  - 2) 이월액 : 45,600천원
  - 3) 집행잔액 : 8,000천원

나. 지출내역 : 4건 (단위 : 천원)

부서	세부사업	지출액	적요
<b>계</b>		<b>391,715</b>	
평생교육과	다전야외물놀이장 운영	90,000	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(서울고법)에 따른 대금 지급
경제일자리과	가축전염병 예방 운영	45,315	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참여농가 보상금 지급
안전총괄과	재해사전 예방 사업	106,400	태풍 차바 피해지역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재난 원인조사 용역 구비부담분
문화의전당	계약지출관리	150,000	울산지법(2015가합22539)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# 근거법규

## 지방재정법

**제43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**제129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4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